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어린이집의 위생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명시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21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위생관리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제출하는 원장 자격 증명 서류를 지자체에서 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의3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반명합판”을 각각 “반명합판,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로 한다.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는 법 제10조의 어린이집을 의미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②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 최상위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다만,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을 의미한다.

가. 법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나.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다. 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라. 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마. 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3.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4.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5.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
집

④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6(공공형어린이집의 재지정) ①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재지
정 심사일 기준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 최상위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행정처분 또
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다만,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
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는 다
음 각 목을 의미한다.

가. 법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
령

나.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다. 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라. 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마. 법 제54조 위반으로 벌칙 부과

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2번 이상 부과받은 경우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6조의 처분을 받은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

③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재지정받으려는 자는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대상기관 자체평가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7(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① 공공형어린이집은 운영현황 조사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8(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2.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4.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5.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7.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단, 이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지정 취소된 어린이집에 대해 지정 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한 운영비를 환수한다.

④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거나 자진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된다.

⑤ 그 밖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5제2항 중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를 “법 제26조의2 및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8까지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

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 2022년 1월 1일

별표 8의2 제1호바목 단서 부분의 전단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전단 중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을 “최근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 및 법 제33조의4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목 3)다) 중 “별표 8 제3호다목”을 “법 제33조의4 및 별표 8 제3호다목”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중전의 다목)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자격정지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5. <u>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u> 6. ~ 11. (생략) ② ~ ⑦ (생략)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의3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 6. ~ 11.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① ---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1. 공통 제출서류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
반신 반명합판,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1장

2. 3. (현행과 같음)

②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
모 정면 상반신 반명합판) 1장

③ (생 략)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
모 정면 상반신 반명합판, 온
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 1장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지
정)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
른 어린이집의 종류는 법 제10
조의 어린이집을 의미한다. 다
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②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지
정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
라 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 최상위등급 또는 이에 준
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은 지
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

터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및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다만,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을 의미한다.

가. 법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나.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다. 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라. 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마. 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

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3.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4.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5. 시·도별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 후 포기 또는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④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공형어린이집 지

<신 설>

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6(공공형어린이집의 재 지정) ① 시·도별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심사일 기준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 최상위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은 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다만, 행정처분 또는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을 의미한다.

가. 법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나.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다. 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

<신 설>

는 폐쇄명령

라. 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마. 법 제54조 위반으로 벌칙

부과

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

법, 아동·청소년의 정보

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2번 이상 부과받

은 경우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6조

의 처분을 받은 자가 원장으

로 근무하는 경우

③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대상기관 자체평가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형어린이집 재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7(공공형어린이집의 운

영기준) ① 공공형어린이집은

운영현황 조사 시 이에 협조하

여야 하며, 사업실적을 지방자

<신 설>

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의8(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2.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4.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5.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① (생 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7.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단, 이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지정 취소된 어린이집에 대해 지정 취소일이 속한 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익월부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 이미 지급한 운영비를 환수한다.

④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거나 자진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공공형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된다.

⑤ 그 밖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u>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u>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제38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u> ② (생략)	<u>법 제26조의2 및 제34조제1항</u>- ----- ----- ----- ----- ----- -----. 제42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8까지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재지정·운영기준 및 지정 취소: 2022년 1월 1일</u> 6. 제38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② (현행과 같음)
---	---